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 선고 2021가단5316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361,600원 및 그 중 167,635,706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2021. 12. 7.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와 B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B조합에 대하여는 2021. 12. 27.자 화해권고결정이 2022. 1. 11. 확정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조해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168,223,336원) 채권자입니다.

나. 피고 1은 본건에 있어 사해행위를 행한 채무자이고, 피고 B조합(이하 '피고 2'라 한다)은 본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입니다

2. 원고의 채권보전

가. 원고는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 1의 보증 부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3. 27. 보증번호 C, 보증원금 190,000,000원, 보증기한 2025. 3. 27.로 된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를 피고 1에게 발급해주어, 피고 1은 이를 담보로 소외 D은행 방학동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여신거래약정서).

나. 피고 1은, 원고 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소외 은행에 변제기한(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채권자인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제10조(상환범위)에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상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상환범위)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율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3.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피고 1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21. 9. 2. 거래정지처분 사유 발생으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갑 제4호증 사고발생보고서), 소외 은행은 피고 1이 변제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재단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소외 은행에 2021. 10. 7. 170,553,446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갑 제5호증 대위변제증서), 이후 2,917,7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 함으로써 현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67,635,706원입니다[(갑 제6호증 사고/구상권(특수채권)원장)].

(2) 대지급금

피고 1에 대해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2787 부동산가압류 비용으로 587,630원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미회수 대지급금 잔액은 587,630원입니다(갑 제7호증 지출결의서).

(3) 지연손해금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21. 10. 7.부터 현재까지는 연 7%입니다(갑 제8호증 신·구 조문 대비표).

4. 채권자 구상금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여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각 보증약정은 2020. 3. 27.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21. 9. 2.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21. 10. 7.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본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가. 피고 1에게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입니다.

나. 그런데 피고 1의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타 은행의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여러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구번호	접수	사건번호	채권자 및 금액
3	2021년 9월 13일 제123710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단22177	중소기업은행 금216,776,114원
4	2021년 9월 14일 제12386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3810	E 금39,000,000원
5	2021년 9월 14일 제123889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단22200	신용보증기금 금840,500,000원
6	2021년 9월 14일 제12411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2787	서울신용보증재단 금170,181,100원
7	2021년 9월 24일 제127065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2860	한국무역보험공사 금706,812,000원
8	2021년 9월 27일 제1276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15954	F주식회사 금300,000,000원
9	2021년 11월 9일 제147610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3324	신용보증기금 금57,849,600원

또한 피고 1은, ① 을구 1번 2020. 2. 26. 제26846호 채권최고액 금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을구 2번 2021. 6. 3. 제73780호 채권최고액 미화 120,000달러의 근저당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22416호로 같은 달 1.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2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인 피고 1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2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이에 터잡아 피고 2에게 위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6.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 1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 2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2가 자신의 선의를 항변하려면 상당히 객관적인 입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상과 같이 피고 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8. 결론

가. 그렇다면,

1) 피고 1은 원고에게 168,223,336원(대위변제금 잔액 167,635,706원 + 대지급금 587,630원) 및 그 중 167,635,706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1. 9. 1.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3)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9. 9. 접수 제12241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9. 관할에 대한 의견

본 사건은 신용보증약정 제19조에 의하여 귀원에 합의관할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변경된 청구원인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중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은 이를 그대로 원용합니다. 피고 1에 대한 대지급금이 추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따라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대지급금의 변경]

피고 1에 대해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2787 부동산가압류 비용 587,630원이 발생되었고, 그 중 25,416원이 회수되었으며(갑 제10호증 구상채권현황), 또한 202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3235 부동산가압류 비용 563,840원(갑 제11호증 지출결의서), 2021. 12. 2.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3746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 비용 599,840원(갑 제13호증 지출결의서) 등이 발생하여 현재 대지급금 잔액은 1,725,894원입니다(갑 제10호증 구상채권현황).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

지2층 6597.984㎡

지1층 6479.0465㎡

1층 3995.8979㎡

2층 3795.1181㎡

3층 3663.2174㎡

4층 3705.5126㎡

5층 3705.5126㎡

6층 3705.5126㎡

7층 3705.5126㎡

8층 3705.5126㎡

9층 3705.5126㎡

10층 3555.6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11.9573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

지2층 6597.984㎡

지1층 6479.0465㎡

1층 3995.8979㎡

2층 3795.1181㎡

3층 3663.2174㎡

4층 3705.5126㎡

5층 3705.5126㎡

6층 3705.5126㎡

7층 3705.5126㎡

8층 3705.5126㎡

9층 3705.5126㎡

10층 3555.6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0.80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5.3231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

지2층 6597.984㎡

지1층 6479.0465㎡

1층 3995.8979㎡

2층 3795.1181㎡

3층 3663.2174㎡

4층 3705.5126㎡

5층 3705.5126㎡

6층 3705.5126㎡

7층 3705.5126㎡

8층 3705.5126㎡

9층 3705.5126㎡

10층 3555.6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11.9573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4.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

지2층 6597.984㎡

지1층 6479.0465㎡

1층 3995.8979㎡

2층 3795.1181㎡

3층 3663.2174㎡

4층 3705.5126㎡

5층 3705.5126㎡

6층 3705.5126㎡

7층 3705.5126㎡

8층 3705.5126㎡

9층 3705.5126㎡

10층 3555.6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11.9573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5.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

지2층 6597.984㎡

지1층 6479.0465㎡

1층 3995.8979㎡

2층 3795.1181㎡

3층 3663.2174㎡

4층 3705.5126㎡

5층 3705.5126m²

6층 3705.5126m²

7층 3705.5126m²

8층 3705.5126m²

9층 3705.5126m²

10층 3555.624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0.8075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m²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5.3231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6.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m²

지2층 6597.984m²

지1층 6479.0465m²

1층 3995.8979m²

2층 3795.1181m²

3층 3663.2174m²

4층 3705.5126m²

5층 3705.5126m²

6층 3705.5126m²

7층 3705.5126m²

8층 3705.5126m²

9층 3705.5126m²

10층 3555.624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0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0.8075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m²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5.3231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7.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m²

지2층 6597.984m²

지1층 6479.0465m²

1층 3995.8979m²

2층 3795.1181m²

3층 3663.2174m²

4층 3705.5126m²

5층 3705.5126m²

6층 3705.5126m²

7층 3705.5126m²

8층 3705.5126m²

9층 3705.5126m²

10층 3555.624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1층 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1.9875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m²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15.858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8.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

지2층 6597.984㎡

지1층 6479.0465㎡

1층 3995.8979㎡

2층 3795.1181㎡

3층 3663.2174㎡

4층 3705.5126㎡

5층 3705.5126㎡

6층 3705.5126㎡

7층 3705.5126㎡

8층 3705.5126㎡

9층 3705.5126㎡

10층 3555.6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3.8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11.2282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9.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223.2486㎡

지2층 6597.984㎡

지1층 6479.0465㎡

1층 3995.8979㎡

2층 3795.1181㎡

3층 3663.2174㎡

4층 3705.5126㎡

5층 3705.5126㎡

6층 3705.5126㎡

7층 3705.5126㎡

8층 3705.5126㎡

9층 3705.5126㎡

10층 3555.6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1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1.98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G

대 7458.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7458.8분의 15.858

을구 3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10.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S에 있는

T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U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834.4203㎡

지2층 7296.3819㎡

지1층 7172.8850㎡

1층 4356.9674㎡

2층 4091.1509㎡

3층 3942.4757㎡

4층 4004.3896㎡

5층 4004.3896㎡

6층 4004.3896㎡

7층 4004.3896㎡

8층 4004.3896㎡

9층 4004.3896㎡

10층 3838.45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0.80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S

대 805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8056.5분의 5.36

을구 2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1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S에 있는

T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U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10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지3층 6834.4203㎡

지2층 7296.3819㎡

지1층 7172.8850㎡

1층 4356.9674㎡

2층 4091.1509㎡

3층 3942.4757㎡

4층 4004.3896㎡

5층 4004.3896㎡

6층 4004.3896㎡

7층 4004.3896㎡

8층 4004.3896㎡

9층 4004.3896㎡

10층 3838.45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0.80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S
대 8056.5m'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8056.5분의 5.36

을구 2번 2021년9월9일 제122416호 전세권

- 이 상 -

